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적 수치심’ 을 ‘성적 불쾌감’ 으로 변경〉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09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2
2. 법률용어로서 ‘수치심’의 의미와 용례	5
3. 성폭력처벌법상 ‘수치심’ 표현에 관한 개정 논의	13
4.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u>수치심</u>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 ----- ----- ----- -----불쾌감----- ----- ----- ----- -----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 -----불쾌감----- -----

현행	개정안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 ----- ----- ----- -----불쾌감-----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 ----불쾌감----- ----- -----

현행	개정안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2. 법률용어로서 ‘수치심’의 의미와 용례

가. ‘수치심’ 표현 사용 현황

- 2025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총 15개로, 주로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법률은 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에서의 수치심이란 일반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의미하며,¹⁾ 그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형사처벌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로는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철도안전법」 및 「항공보안법」 등 7개 법률이 있음.
- 그 밖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8개 법률은 업무처리에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로,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각각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 ‘성적 수치심’의 의미가 아닌 경우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유일함.

< ‘(성적) 수치심’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현황 >

2025년 8월 현재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신체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u>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u>	업무처리 준수사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준수사항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형사처벌 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u>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u>	행정제재 대상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u>	행정제재 대상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u>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행정제재 대상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u>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형사처벌 대상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u>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u>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u>	형사처벌 대상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u>	형사처벌 대상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u>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형사처벌 대상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u>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u>	행정제재 대상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②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u>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업무처리 준수사항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13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u>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u>	형사처벌 대상
14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u>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u>	형사처벌 대상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u>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업무처리 준수사항

주: 노란 음영은 형사처벌 대상 관련 법률

- 한편, ‘수치심’은 아니나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끄러운 느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률도 존재함.²⁾³⁾

< ‘부끄러운 느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현황 >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형사처벌 대상

2) ‘수치심’과 ‘부끄러운 느낌’이라는 각 표현에 대하여는 해석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Ⅲ. 4. 가. 참조.

3) 현재 ‘부끄러운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과다노출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함(동법 제3조제1항제33호 참조).

나. ‘수치심’의 일반적 의미와 법률상 용례

-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일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고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로서 ‘(성적) 수치심’의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은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치’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단어임.⁴⁾
- 현행 법체계에서 ‘(성적) 수치심’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해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임.⁵⁾
-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반 보통인을 기준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질을 ‘음란성’이라고 하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범죄행위는 음란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임.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96033&searchKeywordTo=3 (2025. 6. 13. 확인)

5)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치심을 주는’ 등과 같은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註: 現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법률이 음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성적) 수치심’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해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라고 이해됨.⁶⁾

6) 「형법」 제243조에 따른 음화반포행위 등의 경우 법률에 성적 수치심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입장에 있음(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등).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제244조의 음화등의 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도화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해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이 그 행위의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일반적·객관적 판단은 성적 수치심에 관한 다른 범죄, 예컨대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도 요구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수치심’ 표현에 관한 개정 논의

□ 일상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이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강간 등 범죄에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포함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였음.⁷⁾

○ 제21대국회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4건 발의되었다가 2024년 5월 29일 제21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수치심’을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으로 수정하는 법률안 3건, ‘수치심’을 삭제하고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 1건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었음.

7)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운영지원단 (2022. 7. 4.), 8.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의 표현 수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13인 중 8인은 ‘불쾌감’, ‘모욕감’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양형위원회, 제116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수석전문위원 (2022. 5. 2.), 26-27.

< ‘(성적) 수치심’ 관련 주요 법률안(제21대국회)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비고
2103173 (고민정)	20.08.25.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임기만료폐기
2113659 (김민석)	21.12.02.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등	임기만료폐기
2118967 (이탄희)	22.12.16.	'수치심'을 '모욕감'으로 변경 등	임기만료폐기
2122624 (양경숙)	23.06.13.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	임기만료폐기

- 제22대국회의 경우 동 법률안 외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성적) 수치심’ 관련 주요 법률안(제22대국회)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비고
2202209 (정춘생)	24.07.24.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등	
2203363 (임오경)	24.08.30.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등	

4.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치심’이란 문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뜻하므로, 현행 규정이 피해자에게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 잡자는 데에 취지가 있음.

□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표현 변경은 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률에서 ‘수치심’은 해당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 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성(性)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에서 ‘수치심’은 ‘부끄러움’과 유사하나,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⁹⁾¹⁰⁾¹¹⁾

8)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4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舊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대하여 ‘수치심’을 ‘부끄러움’으로 변경하는 것이 수범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도중진 등, “청소년 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2.

9)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 등.

1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 또한, 법률상 ‘수치심’은 대상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사전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불쾌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으로, ‘떴떴하지 못함’ 내지 ‘부끄러움’을 뜻하는 ‘수치심’과는 의미가 상이하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의 외연(外延)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의 외연보다 넓다고 볼 소지가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 ‘부끄러운 느낌’ 내지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대개 성(性)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불쾌감은 수치심보다 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

< ‘불쾌감’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현황 >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u>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u> 을 준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11) 법률에서 ‘수치심’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다는 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제21대국회 제404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3. 22.), 55.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수치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인 용어와 달리 지금 대법원에서는 확장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수치심’이라는 용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2	궤도운송법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u>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u>
3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u>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u> 를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u>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u> 를 말한다.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u>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u> ·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주: 노란색 음영은 형사처벌 대상 관련 법률

-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인 '부끄러운 느낌'을 '불쾌감'과 병렬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성적인 맥락에서도 수치심 내지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

○ 이처럼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순수한 사전적 의미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표현의 의미 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의 보호법익,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의 개념상의 차이, 수치심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 법률규정과 「경범죄 처벌법」 규정과의 구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만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할 경우 판례가 인정해온 ‘성적 수치심’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게 되고,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과 구별되는 의미인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처벌범위의 변화 여부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 용어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1
